의안번호	2204923
의 뢰 인	안도걸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4.
추계번호	24F458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등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이하 'R&D 세액공제')의 적용기한을 2024년말에서 2027년말까지 3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6년 1조 4,088억원, 2028년 1조 5,859억원 등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4조 4,923억원(연평균 1조 4,97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·소득세, 2026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0조제1항)	−14,088	−14,976	−15,859	−44,923	−14,974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– (현행) 2024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 ○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을 포함 –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현행 반도체 등 7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8개로 확대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	○ 단,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내용은 합리적인 추계가 불가능하여 본 추계에서 제외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현행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감안하여,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6년부터 발생

○ 2025~2027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는 2026~2028년에 신고됨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6~2028년간 발생한다고 가정

❑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
○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기술별 2023년 기술별·기업규모별 R&D 세액공제 신고실적 및 2024년 세액공제 실적(잠정치)을 활용

– 단, 2024년 실적의 경우, 공제액 총액정보만 활용 가능하여 기술별·기업규모별 분포는 2023년과 동일하다고 가정

○ R&D 세액공제는 각각 국회예산정책처의 향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[1]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

○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에 대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, 해당 R&D에 대해서는 일반 R&D에 대한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, 공제율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
❑ 향후 기업에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여 확대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, 최저한세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

❑ 동 추계는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음

○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&D 세액공제 연장에 따라 기업의 R&D 지출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, 추계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음

❑ 이외에도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합리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하여 본 추계에서 제외함

○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로 규정되는 인공지능 분야의 범위와 해당 분야의 향후 R&D 지출액, 사업화시설 투자액

1)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5년 NABO 경제전망: 2024~2028」, 2024.10.

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❑ (제도 개요) R&D 세액공제는 기업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, 기업규모별·기술별로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

○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에 대해서는 일반 R&D(당기분)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

- 신성장·원천기술 R&D: 대기업 20%, 중견기업 20%, 중소기업 30%
- 국가전략기술 R&D: 대기업 30%, 중견기업 30%, 중소기업 40%

※ '매출액 대비 R&D 비중×3(한도 10%)'를 한도로 추가공제율 적용

[표 2] 일반,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율

(단위: %)

	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일반	증가분	25	40	50
	당기분	최대 2[2)]	8	25
신성장·원천기술		20~30	20~30[1)]	30~40
국가전략기술		30~40	30~40	40~50

주: 1) 코스닥에 상장한 중견기업의 경우, 공제율 25~40% 적용함
2) 일반기업의 당기분 공제율은 '수입금액 대비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 비중 × 1/2'로 계산함

❑ (공제실적) 2023년 R&D 세액공제 실적은 4조 6,302억원, 2024년 실적(잠정치)은 3조 588억원 수준

○ 2023년 기업규모별·기술별 공제실적(법인세)은 다음과 같음

[표 3] 기술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실적(법인세): 2023년 신고 기준

(단위: 억원)

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계
일반 R&D	14,852	2,886	6,023	23,760
신성장·원천기술 R&D	266	255	8,971	9,492
국가전략기술 R&D	32	9	11,927	11,968
계	15,150	3,150	26,920	45,221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○ 2024년 공제실적(잠정치)은 3조 588억원으로 2023년 대비 34.6% 감소한 수준

(2) 추계방법

❑ (향후 공제액 전망치) 2024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(2024.10.)에 따라 향후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

○ 단,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의 시차(1년)를 고려하여 t년의 공제액은 t−1년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에 따라 변동

[표 4]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액 전망

(단위: 억원, %)

<신성장·원천기술>	2026	2027	2028
중소기업	194	206	218
중견기업	186	197	209
대기업	6,530	6,941	7,351
계	6,910	7,345	7,778
<국가전략기술>	2026	2027	2028
중소기업	24	25	26
중견기업	7	7	8
대기업	8,682	9,229	9,773
계	8,712	9,261	9,807
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증감율 전망(t−1)	6.0	6.3	5.9

주: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증감율은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 간의 시차를 고려하여 1년전 값을 적용

❑ (세수효과) 앞서 전망한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 일반 R&D 공제율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
○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에 대한 공제율 특례가 종료될 경우, 해당 R&D는 일반 R&D 공제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가정

[표 5]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공제액 변화

(단위: 억원)

		2026	2027	2028
신성장·원천기술 R&D	일반 R&D 공제율 기준(A)	938	997	1,056
	신성장·원천 공제율 기준(B)	6,910	7,345	7,778
	차이(B−A)	5,971	6,347	6,722
국가전략기술 R&D	일반 R&D 공제율 기준(A)	595	633	670
	국가전략 공제율 기준(B)	8,712	9,261	9,807
	차이(B−A)	8,117	8,628	9,13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3) 추계결과

❑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말에서 2027년말까지 3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·소득세는 2026년 1조 4,088억원, 2028년 1조 5,859억원 등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4조 4,923억원(연평균 1조 4,97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·소득세, 2026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0조제1항)	−14,088	−14,976	−15,859	−44,923	−14,974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